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0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재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금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 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남북교류협력기금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어 온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동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금 조성 이후 지출 이력이 없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타 회계 의존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191개 기금¹⁾에 대해 일반회계로의 통합 또는 수입구조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존율 99.01%)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3.12.31.)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1) 광역자치단체 24개 및 기초자치단체 167개 기금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1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규모·절차·방법 및 정산 등(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훈련장”을 제52사단 제21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해당 훈련장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박달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주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소속 예비군 대원들이 해당 훈련장에 배정됨.
- **안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영등포구 예비군이 훈련을 받게 되는 박달과학화훈련장은 대중교통 기준, 안양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훈련장 인근에서 하차하는데¹⁾ 훈련 당일 마을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1) 영등포구청역-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 간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 지하철로 안양역 하차 후 마을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색됨.

입소시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관할 지역 안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 입소와 관련한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미 국방부에서 급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복 지원 및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입소자에 대한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포함 다른 자치구²⁾에서 고물가 상황에 생업까지 중단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임.

2) 양천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참 고 자 료

1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3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2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개인정보 보호원칙,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 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안 제6조)
- 라. 파일 등록·유출·파기(안 제7조~제9조)
- 마.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안 제10조, 제11조)
- 바. 개인정보보호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사.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안 제14조)
- 아. 보험·공제 등의 가입(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함.
-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처리 목적의 명확화,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건으로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공공기관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대책)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유출 경위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강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안 제11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처리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음.¹⁾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통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신고	1,041	1,091	7,844	9,976
상담	158,214	176,366	202,923	537,503
합계	159,255	177,457	210,767	547,479

-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²⁾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³⁾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1238(2022. 10. 24.)

참 고 자 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3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통장 위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장심의위원의 심의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있음.
- 의견: '통장 심의수당'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문구 변경(안 제11조제3호)
 - 기존: 3. 통장 심의수당
 - 변경: 3. 통장심의위원: 심의수당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통장 위촉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수당 등)에서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심의위원회는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한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서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심의위원 참석 수당 등의 보상이 없음.
- 본 안건은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와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동별 통장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통장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4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4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을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영등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1조~제6조)
- 다.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영등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을 명시함.
- **안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함.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안)」(2023.4.)에 나와 있는 중점 과제와도 부합함.

- **안 제4조(미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 미래교육지원을 위하여 미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안 제6조(보조금의 평가·관리)**는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미래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안 제7조(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3조(수당 등)**까지는 미래교육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내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운영협의회를 두도록하고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추진해 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1) 행정예고(2022.11.9.)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과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새롭게 추진 됨.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구 특화사업의 발굴 및 확대, 소통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음.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

1.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2.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3.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4.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수업과 평가체제 구축

□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요약)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체계화
지역자원 연계 방과후·돌봄 활동 통합지원	- 지역연계 방과후 활동 지원 및 자치공간 확대 - 지역연계 맞춤형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운영 - 지역 유관기관 협력으로 미래역량 함양 프로그램 발굴·지원
행정지원체계 구축	- 지역연계 교육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소통중심 협의체 운영 - 서울미래교육지구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지원

-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공동 협약을 체결(2023.5.11.)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 완료됨.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²⁾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안건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온 영등포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출범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수립된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과도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2023년에 한해 2023.지정일~2024.12.31.임.(「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계획」)

참 고 자 료

1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

재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외협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